

제328회 임시회  
2014. 3. 20.(목)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3. 20.(목)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14년 3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4년 3월 13일

-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 법률 자문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방법 개선 및 위촉인원 확대(안 제2조)
  -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방법 도입
  - 징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 제한
  - 고문변호사 3명에서 7명까지 위촉 확대

-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마련(안 제4조)
  - 소송사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 고려
-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제한(안 제5조)
  - 2회에 한하여 연임
-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 정보공개 신설(안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 동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증대되고 있는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고문변호사 확대 인원(최대 7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개모집, 외부기관 추천 등 새로 도입되는 위촉방식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 이내”를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쟁송사건 중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전 제4조제1항)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중전 제4조제2항) 중 “법률고문에 응하는”을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촉) 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u>3인 이내</u>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2조(위촉) ① 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u>7명 이내</u>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p>  <p>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도지사가 제3조제1항의 쟁송사건 중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p>	<p>제5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u>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② 고문변호사가 <u>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u></p> <p><u>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생략)</u></p> <p><u>제6조(수당) (생략)</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② 고문변호사가 <u>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u></p> <p><u>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현행 제5조와 같음)</u></p> <p><u>제7조(수당) (현행 제6조와 같음)</u></p> <p><u>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연 1회이상 공개한다.</u></p>

## 관계법령 발췌

### □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 □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 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

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 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 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 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